

#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2003. 12. 15  
[ 규칙 제45호 ]

개정 2007. 3. 26 규칙 제117호  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  
개정 2007. 12. 21 규칙 제132호  
개정 2008. 3. 7 규칙 제135호  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  
일부개정 2017. 12. 28 규칙 제329호  
(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)  
일부개정 2018. 12. 28 규칙 제351호  
(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)  
일부개정 2020. 12. 29 규칙 제395호  
(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증평군  
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12. 21, 2017. 12. 28>

제2조(의안의 제출) ①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요구서(별지 제1호서식)를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 의안을 제출한 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(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3. 26, 2008. 3. 7, 2018. 12. 28, 2020. 12. 29>

제3조(심의의결서 등)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의결서(별지 제2호서식), 회의록(별지 제3호서식), 심의의결 대장(별지 제4호서식)을 작성하여야 한다.  
②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) ① 지역경제활성화대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중소기업(재래시장)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
2.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물가대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7. 12. 28>

1. 시내버스요금, 택시요금, 도시가스요금(단,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 요금연동제 시

행지침에 의한 원료비 조정시는 제외)의 결정 관리. 다만,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 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 생략

2.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

3.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

③ 유통산업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규모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매 또는 소매점포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의 조정을 위한 대규모점포 개설자 등에 대한 권고 사항

2. 판매사업을 행하는 공공법인 등에 대한 권고 사항

④ 유통·물류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화물유통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

2. 유통단지의 개발, 지정,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

3.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⑤ 소비자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

2. 소비자단체의 사업 타당성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

3.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

⑥ 전자거래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자거래촉진시책 수립 및 시행

2.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육성지원

제5조(분과위원회의 운영) ①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필요한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을 통합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제6조(시행규정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 3. 26 규칙 제117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⑱ 까지 생략

⑳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실·과장”을 “실·단·과장”으로 한다.

㉑ 부터 ㉒ 까지 생략

부칙(2007. 12. 21 규칙 제132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8. 3. 7 규칙 제135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칙과의 관계) 이 규칙의 개정으로 다른 규칙의 기구 및 직제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2017. 12. 28 규칙 제329호,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 12. 28 규칙 제351호,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)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 12. 29 규칙 제395호,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

증평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)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빈 면-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심 의 요 구 서

일련번호		심의방법		주관부서	
분과위명					
심의안건					
심의요 내 용					
사 유					
관계법령 등 참고사항					

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제출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실·과장    인

분과위원회 위원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## 심 의 의 결 서

일련번호		심의방법		주관부서	
분과위명					
심의안건					
심의 요구 내용					
의결내용					

위와 같이 의결한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위원회(분과위원회)	위원장	서명
	위 원	서명
	위 원	서명
	위 원	서명
	간 사	서명

[별지 제3호서식]

위원회 회의록

				간사	위원장	결재
일시	위원회명			심의방법		
참석상황	위원수	참석	불참			
안건						
○ 심의내용						
○ 의결사항						

[별지 제4호서식]

## 심 의 의 결 대 장

접 수		안건명	심의방법	주관부서	심 의		비 고 (분과위원회명)
월일	번호				월일	결과	